

의안번호	제 804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예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8월 25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0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8월 25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의 직위를 현행화
- 환경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규정을 중앙위원회 규정에 일치
-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에서 다변화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간사를 '환경정책과장'에서 '업무담당과장'으로 변경(안 제3조제1항)
- 환경분쟁조정 신청 수수료에 납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납부기준에 일치(안 제5조제1항)
- 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한 규정을 수입증지에서 다변화하여 현실화(안 제5조 제2항 및 3항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3조제1항 중 “환경정책과장”을 “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별표와 같다”를 “「환경분쟁 조정법」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증가전 수수료”를 “증가전의 수수료”로 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충청북도수입증지·현금·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<u>환경정책과장</u>이 된다.</p> <p>② ~ ④ 생략</p> <p>제5조(수수료) ① 위원회에 알선·조정·재정 등의 신청을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<u>별표와 같다</u>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<u>충청북도 수입증지로</u>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알선·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금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때에는 증가전 <u>수료와</u>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<u>충청북도수입증지로</u>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<u>업무담당과장</u>이 된다.</p> <p>② ~ ④ 현행과 같음</p> <p>제5조(수수료) ① 위원회에 알선·조정·재정 등의 신청을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「<u>환경분쟁 조정법</u>」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.</p> <p>② 알선·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금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때에는 증가전의 <u>수수료와</u>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충청북도수입증지·현금·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</p>

관련법령 발췌

[전자정부법]

제14조(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)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, 수수료, 과태료, 과징금, 범칙금, 벌금, 과료 등을 현금, 수입인지, 수입증지,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[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]

제35조(수수료)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중앙조정위원회에 조정(調整) 등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.

③ 알선·조정·재정 또는 중재를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.

④ 중앙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.

■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19. 10. 8.>

수수료(제35조제1항 관련)

신청별	조정가액별 수수료
알선신청	10,000원
조정신청	1.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: 10,000원 2.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: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5원을 더한 금액 3.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: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0원을 더한 금액
원인재정	신청인 수에 20,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

책임재정 또는 중재신청	1.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: 20,000원 2.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: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 3.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: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
참가신청	1. 조정절차 참가신청: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2. 재정절차 참가신청: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
증거보전신청	5,000원

비고

1.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,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.
2. 제35조제4항에 따라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면제한다.